

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I·II 유형 안내

1. 국가장학금 I 유형[학생직접지원형]

-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* 이하 대학생(대한민국 국적 소지자)에 대하여 지원구간별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함
 - *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소득·재산 환산액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
-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*를 완료한 대학생에 대하여 지원 가능함
 - *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지원구간이 분류된 자
- 재외국민의 경우, 국외 소득·재산 신고 절차*에 따라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
 - *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('17년 제도 시행 이전 입학생도 포함) 또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「국외 소득·재산 신고」 필요
-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지원

| 구분 | 성적 기준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신입생·편입생· 재입학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(백점 환산 점수)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|
| 재학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직전학기 12학점*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** 이상을 획득한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직전학기는 계절학기 미포함 * 졸업학기 학생은 제외 **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(백점 환산 점수) ▶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▶ 예과(수의대, 의대) 수료 및 본과 진학을 앞둔 경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*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* 잔여학점: 예과 수료 필요학점 - 예과 수료 직전학기까지 누적 이수학점 - 성적 기준은 적용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초~차상위는 70점 이상 적용 ▶ 지원 1~3구간은 70점 경고제* 2회까지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성적이 70점 이상 ~ 80점 미만인 경우,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 |

- 학제 및 정규학기(1년 2학기)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 횟수 범위* 내에서 지원
 - * 4년제는 8회, 5년제는 10회, 6년제는 12회까지 가능하며, 편입생 또는 재입학생은 편입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한 최대 지원 횟수에서 편입 전 또는 재입학 전에 지원 받은 수혜횟수를 차감한 잔여횟수를 한도로 지원
-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,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할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됨(적용여부 선택 불가)
 - 단, 신청기간에 교환학생, 해외실습, 질병 등의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능했음을 증명(대학 입증 및 요청)하는 경우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

-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 -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
 - 자퇴,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
 -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
 -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
-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금액

〈 2022년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금액 〉

| 지원구간 |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| 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기초·차상위 | 350만원 | 700만원 |
| 기초·차상위 [신청자 본인(미혼) 서열 둘째] | 등록금 전액 | 등록금 전액 |
| 1구간 | 260만원 | 520만원 |
| 2구간 | 260만원 | 520만원 |
| 3구간 | 260만원 | 520만원 |
| 4구간 | 195만원 | 390만원 |
| 5구간 | 195만원 | 390만원 |
| 6구간 | 195만원 | 390만원 |
| 7구간 | 175만원 | 350만원 |
| 8구간 | 175만원 | 350만원 |

2. 다자녀(세 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

-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(세 자녀 이상)의 모든 자녀(연령 무관, 미혼에 한함)
- 국가장학금 II 유형,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(8구간 이하)
-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수혜 불가
-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금액

〈 2022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금액 〉

| 지원구간 | 다자녀(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, 둘째) | | 다자녀 (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)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| 연간 | |
| 기초·차상위 | 350만원 (단, 둘째는 전액) | 700만원 (단, 둘째는 전액) | 등록금 전액 |
| 1구간 | 260만원 | 520만원 | |
| 2구간 | 260만원 | 520만원 | |
| 3구간 | 260만원 | 520만원 | |
| 4구간 | 225만원 | 450만원 | |
| 5구간 | 225만원 | 450만원 | |
| 6구간 | 225만원 | 450만원 | |
| 7구간 | 225만원 | 450만원 | |
| 8구간 | 225만원 | 450만원 | |

3. 국가장학금 II 유형[대학연계지원형]

- 대학 자체지원기준을 수립하여 국가장학금 I 유형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
 - ※ I 유형 승인된 자만 II 유형 수혜 가능,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
- 우리 대학 자체지원기준
 - 국가장학금 I·II 유형 지원금과 교내 맞춤형 장학금을 연계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생의 등록금 전액 지원
 - 수업연한 초과자, 학사경고자 및 학사경고에 준하는 성적을 취득한 자는 II 유형 수혜 불가

4. 기타 안내사항

가. 가구소득 산정기준

-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·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
- 대학생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(부모 또는 배우자)
 - ※ 국가장학금, 학자금대출(학부생만), 국가근로장학금, 선한인재장학금(생활비), 해외수학장학금, 교내 저소득맞춤형장학금 등의 선정 시 필요
- 산정결과 이의신청: 소득 산정 후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전자민원) 또는 상담센터(☎1599-2000)로 문의

나. 수업연한 초과자

- 수업연한 초과자는 등록금 우선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**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해야** 하며, 수강신청 취소마감 이후 등록금이 확정되면 장학금을 직접지급(대출상환)함
- 국가장학금 **I 유형만 지급**함,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급 대상 아님

다. 복귀생

-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, II 유형도 지급 (※ 휴학 당시 기수혜자는 지급 제외)

라. 유의사항

- 국가장학금 I·II 유형은 학부생만 수혜 가능
- 국가장학금 I·II 유형 선발결과는 추후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
(등록금 고지서에 “국가장학금 I·II 유형”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, 우선감면 미 적용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 지급)
- 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(귀)신청을 해야 국가장학금 심사가 가능하므로 **신속하게 복학(귀) 신청을 완료할 것**
-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**장학금 수혜 후 반드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함**
(이중수혜일 경우,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)
- 포털[mysnu]에 본인명의 계좌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장학금 수혜 가능

